

고령자 및 장애인 신탁재산세 면제 신고서

신청인의 주택이 신탁 자산인 경우 본 신고서를 고령자 및 장애인 부동산세 면제 신청서(Senior Citizen and Disabled Persons Claim for Exemption from Real Property Taxes) (REV 64 0002)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주: 본 신고서는 신탁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본 신고서는 기존의 신탁 자산에 해당하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자산에 대한 면세를 신청하는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To Be Completed By County

County Name: _____ Parcel Number: _____

Senior Citizen/Disabled Person's Application Number: _____

신청인 작성

신청인 이름(정자체): _____

부동산 주소: _____

시/주/우편번호: _____

신고 - 중요 - 본 신고서 뒷면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본인은 위의 필지에 위치한 주거지가 신탁 부동산임을 신고합니다. 또한 본인은 신탁이 아래에 정의된 소유 요건을(하나를 선택하여 체크) 충족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WAC 458-16A-100(21)(a) — 신청인이 신탁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종신 물권을 보유하거나 종신 물권을 증서로 전달합니다. 증서 사본 첨부.
- WAC 458-16A-100(21)(b) — 신청인이 신탁의 "설정자(settler)" 또는 생성자이며 본인에게 주 주거지의 수혜 이익을 부여하였거나 신탁의 특정 부분을 부여하였고 수혜 자격은 평생 유지됩니다.
- WAC 458-16A-100(21)(c) — 신탁은 취소 불능이며 신청인이 수혜자입니다. 본인이 평생 주 주거지 신탁 부분에 대한 수혜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본 양식의 뒷면 법률과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주: 귀하는 신탁이 소유권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신탁 부분의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앞서 진술한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신청인 대리인 - 정자체	장소
신청인 대리인 서명	날짜
신청인 - 정자체	장소
신청인의 서명	날짜

지침

본 양식 작성 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카운티 세액 사정인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고령자 및 장애인 재산세 면제 프로그램의 소유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탁을 통한 소유권을 허용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부동산이 신탁 자산일 때 소유권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소유권 충족 여부를 나타내는 신탁 사본 (또는) 신탁 일부분의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직접 이 양식을 작성하시거나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CW 84.36.381(2) 면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인은 "종신 물권이나 계약 구매를 통한 완전 소유" 제출 시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종신 임대는 종신 물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위한 소유권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탁에서 면제를 받을 주택의 "종신 물권" 권리를 면제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신탁에 이전된 시기에 종신 물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는
- 종신 물권이 면제를 신청한 사람의 증서를 통해 나중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는
- 신탁 상에 면제될 주택의 종신 물권을 면제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WAC 458-16A-100 (19), (21) 및 (22)는 소유권 요건을 명시합니다:

(19) 종신 임대 "종신 임대"는 임차인의 사망 시 종료되는 임대를 뜻합니다.

(21) 종신 물권. "종신 물권"은 지속기간이 소유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의 수명 기간으로 제한된 부동산을 뜻합니다.

(a) 주 거주지의 신탁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 시 종신 물권의 보유는 종신 물권으로 성립됩니다.

(b) 신탁의 수익권은 본인에게 주 거주지 직접 수익권 또는 본인의 거주지를 포함한 신탁의 일부의 수익권을 부여한 취소 가능 또는 취소 불능 신탁 설정자의 수명 기간 이상의 이간 동안 종신 물권으로 간주됩니다.

(c) 신탁 문서에서 수익권자의 수명 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익권이 부여된 경우, 취소 불능 신탁의 수익권은 취소 불능 신탁으로 보유된 본인의 거주지에 대한 수익권을 부여받은 수익권자의 종신 물권 또는 종신 임대로 간주됩니다.

(22) 소유. "소유"는 "계약 구매"와 "완전 소유", "종신 물권" 및 "종신 임대"를 포함합니다. 혼인이나 동거를 통해 소유한 주택 또는 공동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은 각 배우자나 각 동거인 또는 각 공동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